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 - 02166호

시행일자 2025. 5. 2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-4468(2025.5.20.)

3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약사법」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5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48조제15호, 제60조제11호, 「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선정·공고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온바,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공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 → 알림 → 공지/공고 → 공고)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.

※ 붙임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
2. 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 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